한국 계좌 정보 올 6월30일자 기준 IRS 자동 제공

〈 단독보고 5만달러·최고 잔액 7만5000달러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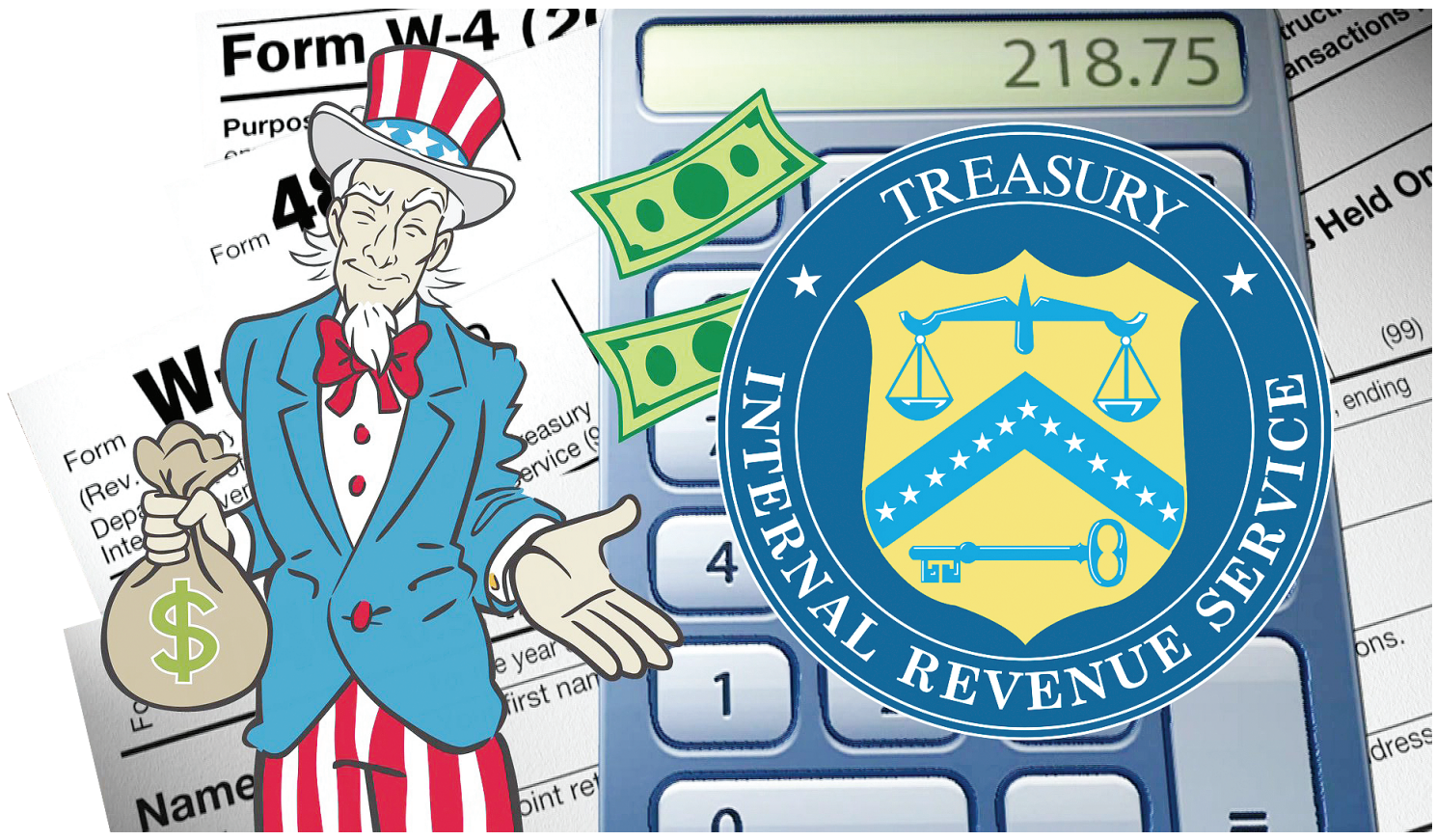

2009년 스위스 은행들의 계좌정보가 공개되면서 해외 금융계좌 보고 의무(FBAR)와 소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연방국세청(IRS)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IRS는 그간 불이행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진신고제도 실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순응률은 20%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IRS는 더욱 강력하고 진일보된 방법으로 불이행자를 색출해 엄벌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법(FATCA)이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TCA가 시행되면 매년 6월 30일 현재 금융 자산액이 단독보고 기준 5만 달러이거나 연중 최고 잔액이 7만5000달러 이상이면 그 다음해 자동적으로 IRS에 계좌정보가 제공된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달 초 FATCA이행에 관한 미국과의 협정을 금년 5월 말에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힌 상태여서 정보교환은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30일 계좌잔액부터 해당된다. FATCA는 현재 23개국이 협정에 서명하였고 50여국에 협상 중에 있는데 해외은행과 외국정부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IRS는 더 이상 연기는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며 수만 개에 달하는 해외은행들은 IRS에 4월 25일까지 전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납세자이면서 한국에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에 체류하는 한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미국 납세자의 범주에는 미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재원과 취업자들이 포함된다. 문제는 신고 불이행과 미납세금에 대한 막대한 벌금과 이자로 한인들은 세미나를 전전하거나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해답을 찾지 못하고 2013년 세금보고 시즌을 맞았다.

지난해와 달리 IRS에 최초로 제공되는 한국계좌정보는 올 6월 30일자 잔액이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서 금년 4월 15일 기한의 2013년 세금보고와 6월 30일 기한 FBAR 보고에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IRS가 먼저 불이행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과거 불이행했던 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벌금과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부동산이나 차명계좌로 바꾸는 것은 그렇게 자문 한 전문가와 함께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도 국적 포기세가 있을 뿐 아니라 과거 불이행 문제는 시효(대부분 6년)가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

FATCA 시행으로 해외계좌 정보 교환 초읽기
미 신고 계좌 IRS서 먼저 알게되면 큰 어려움
불이행 납세자 세금보고 연장 후 조치 취해야

이와 관련해 2013년 세금보고 Form 1040, Schedule B, III, 7a에 나오는 해외 계좌가 있느냐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불이행한 과거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yes'에 표시하고 2013년 해외자산과 관련된 소득을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십중팔구 IRS로부터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과거 불이행 사실을 IRS가 먼저 인지한 것으로 간주되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또한 FBAR 위반이 발견되면 납세자 면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법에 어긋나는 자문을 하거나 이를 부추긴 이들도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IRS의 엄정한 집행 의지와 정부간의 공조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지난 3년~6년 사이의 FBAR와 누락 해외소득을 조용히 수정 신고하는 케이스가 수천 건 있었는데 지난해 GAO(한국 감사원에 해당)는 이들 케이스 가운데 시효가 살아있는 것을 철저히 가려내서 조사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면 어떠한 선택이 가능한가? 현재 이들이 합리적으로 막대한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다.

우선 IRS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해결방안인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를 활용하는 것이다. OVDP는 과거 8년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자진신고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난 8년 동안의 연간 잔액 중 최고액의 27.5%, 미납세금, 불성실신고 가산세 20%와 이자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다만 OVDP를 활용할 경우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보장은 되지 않는다.

둘째, 한미 조세협약에 근거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한미 조세협약 3조에 따르면 한국 납세자와 미국 납세자로 동시에 포함될 경우 인적·경제적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 등을 판단기준으로 더 가까운 나라의 납세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즉 한국 납세자로 판단되면 미국에 세금 보고나 해외 금융자산 신고시 한국 납세자임을 동시에 신고하여 관련된 세금, 이자, 과징금 등의 면제를 주장하는 방법이다. 다만 개인별로 한국 납세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최소한 매년 18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세법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해 벌과금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의도적으로 불이행을 한 적이 없으며 법을 잘 몰랐거나 또 법이 어려워 잘 알 수 없었다며 법률적 무지를 주장하는 방법인데 이는 납세자의 교육정도, 직업 등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므로 세법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대부분의 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이지만 극도의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과거 불이행에 대하여 잘 정돈된 정당한 사유와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IRS는 이러한 불이행이 고의거나 납세자가 법을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연방법원에서 아직까지 판례로 인정된 바가 없다는 사실이 한계다.

결론적으로 FBAR를 불이행한 납세자들은 4월 15일에 대책없이 세금보고를 할 것이 아니라 최장 10월 15일까지 연기 신청을 하고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부분에 대한 FBAR 보고 시한이면서 FATCA 시행 시점이기도 한 6월 30일까지는 과거 불이행에 대한 선택사항 검토와 이에 따른 조치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훈
회계법인 CKP
공동대표

UNITED LABOR BANK
SERVICE IS OUR BUSINESS. BANKING IS OUR TRADE.

Small Business Lending
SBA 7(a) and 504 Loans

- Owner-Occupied Commercial Building Purchase or Refinance (Office, Warehouse, Retail, Motel, Gas Station, etc.)
- Business Purchase or Refinance
- Equipment and Inventory
- Leasehold Improvement
- Business Expansion

✓Competitive Rates ✓Fast Approvals

Contact us today to discuss how United Labor Bank can help you achieve your SBA financing needs.

Broker referrals are welcome.
한국어로 상담해드립니다
Jeong H Choi, SVP/SBA Manager
W: 213-355-8901 | **C: 213-448-2770** | jchoi@laborbank.com
Girish Bajaj, SVP/BDO
W: 213-355-8902 | **C: 213-359-9040** | gbajaj@laborbank.com

SBA Preferred Lending Program PLP LENDER | EQUAL HOUSING LENDER | Member FDIC
http://www.laborbank.com